

2024년 상반기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

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
2024년 1월 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모집개요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 1. 8.(월) ~ 2024. 1. 10.(수) 09:00~18:00
- 사업기간 : 2024. 1. 22. ~ 2024. 6. 30.
- 모집인원 : 3명 (2개 사업)
- 업무내용

사업명	업무내용	모집인원	일근로시간	자격요건(필수)
우리동네 주경야독 지원사업	- 도서 대출, 반납 장서 관리 - 도서관 디지털 이용 안내 - 도서관 야간 시설 관리	2명	3시간 (18:00~21:00)	- 컴퓨터 활용 가능자
의료약자 건강도우미	-건강검진 대상자 접수 업무 보조 - 거동 불편자 검사 진행 도우미	1명	3시간 (09:00~12:00)	- 컴퓨터 활용 가능자 - 여성

※ 세부사항은 붙임 2024년 상반기 중구 동행일자리 추가 모집내역 참조

- 근무지 : 중구 보건소 및 관내 작은 도서관
- 신청장소 : 중구청 일자리경제과(중구 창경궁로 17, 구청 별관3층)
- 신청방법

○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 사업번호 기재

※ 신청서에 희망하는 사업의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

○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※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

○ 구비서류

[필수 사항]

- ① 중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(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, 희망 사업번호 기재)
-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, 본인 및 배우자,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- ③ 구직등록확인(필)증 (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(구청 별관1층) 방문·상담 후 발급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)
-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;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)

[선택 사항] 가점대상 확인 (해당자에 한해 제출, 제출자에 한해 인정)

⑤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(중복가점 불가)

- ▷ 쪽방주민 : 쪽방주민 확인서
- ▷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
- ▷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 : 국가유공자증,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보훈청 발급)
- ▷ 여성가장(세대주) - 주민등록상 남편 등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▷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
- ▷ 노숙인 :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)에서 받은 추천서
- ▷ 북한이탈주민 : 등록확인서
- ▷ 결혼이민자 : (국적 취득 전) 외국인 등록증
(국적 취득 후)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
⑥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(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,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)

⑦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: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
⑧ 자격 또는 경력·능력 증빙서류 : 해당 증명서

신청자격 및 선발기준

□ 신청자격
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중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
-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-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, 쪽방주민(남대문)임이 증명된 자
-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69백만원 이하인 자
- 세대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
★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
★ 사업 참여 후에도 배제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사업 참여자에서 제외됩니다. ★

참여배제 대상 (접수일 기준)

- ▶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**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**
 - ✓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(증명자료 제출)
- ▶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**469백만원 초과**인 자
 - ✓ 가족의 범위 :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
- ▶ **세대원 합산** 기준중위소득 **80%**를 **초과**하는 자

<소득판정 기준표(중위소득 80%)>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기준중위소득 80%
1인	1,782,756
2인	2,946,087
3인	3,771,726
4인	4,583,930
5인	5,356,588
6인	6,094,695

※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

※ 근로소득은 고용산재, 국민연금,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국민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소득 모두 합산

- ▶ **1세대 2인 참여자**
- ▶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▶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,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▶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**중도 포기한 자** 및 **강제 퇴임된 자**
- ▶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- ▶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(예외: 대학교(원) 졸업예정자,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야간대학(원) 재학생)
- ▶ 사업개시일 현재 **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**인 자
- ▶ **참여기간 : 2년간 2회까지 가능** (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)
 - ✓ **만60세 이상 고령자**는 2년간 2회까지 가능하나, **연속참여는 2회까지만** 허용
 - ✓ **쪽방주민(남대문), 장애인** 및 **노숙인**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, **연속참여 3회** 허용
 - ✓ 지역공동체일자리, 어르신일자리, 장애인일자리 등 **타 직접(공공)일자리 사업도 참여기간에 포함**
(단, 근로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)
- ▶ 정부 훈령·예규·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
- ▶ 기타 중구청장이 지병,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

□ 선발기준

- 사업별 자격(우대) 조건, 재산보유액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,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취업 취약계층, 자격증, 사업별 고려요소 등
-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
 -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 - ※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
 -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
임금 및 근로조건

- 임금 : 시급 9,860원, 부대경비(간식비) 1일 6,000원 별도, 4대보험 가입 등
 - ※ 급여는 매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월급으로 지급하되, 미사용 연차수당은 계약종료 후 정산지급 단, 임금지급일(10일)이 휴일인 경우,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
- 근로조건 : 1일 3시간, 주 5일 근무 원칙, 주휴·연차수당 지급

결 과 안 내

- 선발자 발표 : 2024. 1. 18.(목) 예정 ※일정 변동될 수 있음
 - 선발 및 미선발 여부는 개별 문자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 - ※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휴대폰 및 유선전화) 기재

기타(유의)사항

- 사업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신 신청서 등 일체 실물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- 가점사항은 증명서 등 서류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선발 후에 각종 신청서 및 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 부적합 및 배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참여자 (중도)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(선발일정)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.
- 본 사업 참여에 따라 소득 발생 등의 사유로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, 신청자는 관련 내용을 사전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(☎02-3396-527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